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2023. 11. 30(목) 10:00

제247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건설국 도로과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433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3. 11. 15.
- 라. 회부일자 : 2023. 11. 15.

2.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제2호)
- 나. 구의회 보고 관련 규정 변경(안 제7조)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합의기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 이유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개정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나. 주요 내용

- 1)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제2호)
 - 안 제2조제2호 :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소음·진동관리법」으로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되어(2009. 6. 9) 해당 조문을 변경함
- 2) 구의회 보고 관련 규정 변경(안 제7조)
 - 제7조제1항의 보고 규정과 중복되며, 보고 절차 상 필요하지 않은 규정으로 삭제가 타당하다 봄
- 3)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의 미비한 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상위 법령의 개정과 맞게 기존 조례의 정비는 적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관계법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 2023. 7. 1.] [법률 제19150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3. 3. 22., 2013. 8. 13., 2016. 1. 19.>

1. “소음(騒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진동(振動)”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 “소음·진동배출시설”이란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음·진동방지시설”이란 소음·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음시설(防音施設)”이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방진시설”이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항시설 안의 항공기 정비공장은 제외한다.
8. “교통기관”이란 기차·자동차·전차·도로 및 철도 등을 말한다. 다만, 항공기와 선박은 제외한다.
9.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소음발생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중 소음이 발생하는 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